

김태욱 변호사의 양돈법률상담 <45>

◆ 본고는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pork.or.kr) '양돈법률상담코너'에 게시된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주 ◆



김태욱 변호사

대체도로 사용 문제

Q 20년 전부터 광산으로 통하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축사가 들어와 그 길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다 수년전 그 도로(사유지) 주인이 도로와 땅(축사를 하던땅)을 매매하였고 그 땅에는 공장(건설자재 보관하는곳)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축사주인이 공장안으로 다닐 수 있는 허가(허가증)를 받아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시정인데 얼마전 그 공장부지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리면서 길 사용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공장부지주인은 옆에 길을 내줄테니 세를 주고 그리다니고 기존의 길은 통제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새로 만든 길은 산에 나무만 없애고 땅만 골라놓았고, 경사가 심할 뿐만 아니라 심한 커브길이 많습니다. 이 길을 큰 차가 다니기는 어려워 원래 길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A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대체도로부지가 기존 도로보다 통행조건이 열악하다면 최소 한 기존도로조건과 같거나 비슷한 도로부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기존 도로의 발생경위·사용기간·인근 다른 토지와의 관계·주위환경 등을 토지소유자에게 잘 설명하여 협의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차량 소음으로 인한 유사산 피해

Q 저희 양돈장 바로 옆으로 농사용 도로가 또 그 옆에는 왕복 4차선 도로가 생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양계장 신축이 시작되면서부터입니다. 양계장 공사를 위한 레미콘 차량부터 시작해서 작업차들이 지나다니면서 유산이 시작 되었습니다. 근데 양계장 공사차량은 매일같이 차소리가 나니까 데지들이 놀라 유산을 하고 자돈에서 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피해나 지금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법이 있습니까?



차량통행 등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면 일단 공사중지 또는 차량통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귀하가 공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양계장쪽과 잘 협의해 보는 한편, 피해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사진촬영, 기록 등) 위에서 말씀드린 법적 조치를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돼지 매립에 관한 문제



돼지가 하루 몇 마리씩 죽어나가서 매립하려는데 가능한지요? 아니면 신고 후 매립할 수 있는지? 주위 사람들은 돼지는 특정폐기물이라 하는데 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폐사의 원인에 따라서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로 매립하지 마시고 반드시 해당 관청에 신고하여 그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돼지 판매 계약에 관한 문제



4월초 돼지 상인과 판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돼지를 팔았습니다. 계약서상 '대금은 출하되기 전까지 전액 결재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인은 제 농장에서 대부분 돼지를 팔고, 남은 모돈 일부를 자기농장에 (법적명의는 친동생 농장) 옮겨 가지고 잔금은 자기농장의 돼지와 팔면 전액 결재한다고 전화로 하였으나, 최종날짜로 약속한 날짜를 어겨서 모돈을 가져오려 합니다. 가능한지요? 그리고, 자기농장에 있던 돼지와 저의 돼지를 제 3자에게 팔았다면 제 3자에게 판매된 모돈을 가져와도 되는지요?



잔금 지급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돼지를 인도하였다면 그 돼지들은 상인의 소유로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후 귀하가 함부로 돼지를 가져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을 다시 촉구하시고 그래도 지급이 안되면 잔금 지급을 위한 법적 절차, 즉 가압류, 대금 지급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양돈**